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조위탁]



(2024. 12. 24.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제조위탁)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제조) 전문

◇ 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납 기 일 : 년 월 일

◇ 납품장소 :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구 브		기그비 ()	기그그에	7] 77 7] 6]	ગ 그મામા
구 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중도금	1 차	%			
	2 차	%			
	•••••	%			
잔 금		%			
합계		100.0%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하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 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 계약이행보증금(선택사항): 원정

◇ 대금지급보증금(선택사항): 원정

◇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

◇ 지연이자요율

가. 지연배상금 요율 : 연 ()%

※ 적용대상: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방위산업물품 수령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중도금·기성금 또는 잔금을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방위산업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증액분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Diamond	하지	나담.	보책	임

- 하자보수보증금률(선택사항) : 계약금액의 ()%
- 하자보수보증금(선택사항) : 금 원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지급기일·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ㅇㅇㅇㅇ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기본계약서 본문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붙 임:1. 기본계약서 본문

- 2. 계약물품 명세서
- 3. 비밀보호 특약서
- 4.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 6. 표준약식변경계약서
- 7.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 8.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제조)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물품 명세서상의 제품(이하 "방위산업물품"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2. "납기"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방위산업물품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한다.
- 3. "선급금"이라 함은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 4.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5.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방위산업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6. "시험품목"이라 함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 7.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8. "원재료"라 함은 하도급거래에서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하며, "주요원재료"라 함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9.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함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미 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 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내용증명우편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⑥ 제3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2장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및 납품

제1절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제5조(발주)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방위산업물품을 제조위탁할 때에는 수급 사업자가 방위산업물품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사양서류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사양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1. 도면, 승인도
- 2. 제작도면, 공정표, 사용재료 명세서(BOM)
- 3. 검사기준 및 규정된 규격(제품규격, 국방규격, License 규격 및 국가별 표준 등)
- 4. 납품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해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방위산업물품의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
- 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승인된 사양서류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원사업자에게 사양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4 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사양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이미 제조된 방위산업물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원재료등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관련 법령의 준수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부품 ·반제품·제품 또는 금형 등(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원재료등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품질·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 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제3항의 검사 및 통지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원재료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원재료등의 하자로 인하여 방위산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원재료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 재료등의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통지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2. 원사업자가 원재료등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 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재료등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재료등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원재료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원재료등의 소유권) 원재료등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원재료등의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다.

제9조(원재료등의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방위산업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원재료등의 취급)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등이 지급된 후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등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등 중 특히 무상원재료등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의 원재료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방위산업물품의 납 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처리방법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조방위산업물품의 제조금지)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품을 제조하지 않는다.

-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요구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에 대하여 기획, 설계, 생산 및 납품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운영하여 제6조에서 정한 사양서류에 일치시켜야하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생산관리·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물품 제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공정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① 원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작기술, 공법, 자재·생산관리 및 품질보증 등의 지도와 조언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1. 재하도급계약서(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 2. 재하도급대상 제조 범위 및 물량
-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다만,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15조(계약 이외 방위산업물품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금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작·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원사업자가 허락한 경우
-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승낙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방위산업물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

제16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방위산업물품의 생산·제조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 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수급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의 승인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도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에 대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방위산업물품의 납품 및 검사

제17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납기일 및 납품장소에 방위산업물품을 납품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방위산업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방위산업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 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방위산업물품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2. 방위산업물품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방위산업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 3. 수급사업자가 방위산업물품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방위산업물품의 보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 제1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품의 납품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 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및 이의신청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조의 완료통지를 받거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 ②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방위산업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0조(부족분·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 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 ④ 수급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과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원사업자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2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위탁을 한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품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방위산업물품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 1.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방위산업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방위산업물품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방위산업물품이 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원재료등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방위산업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방위산업물품의 소유권 이전) 방위산업물품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한 후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방위산업물품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방위산업물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23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산업물품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방위산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6.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7. 기술자료의 반환 · 폐기 방법 및 일자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4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증 등) ① 수급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의해 방위산업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방위산업물품 및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에 따라 방위산업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6조(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방위산업물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노무비·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로써 결정한다.

②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추후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방위산업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하도 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발 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

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위탁수행에 필요한 원재료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방위산업물품을 제조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설계변경, 방위산업물품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방위산업물품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0조(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방위산업물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방위산업물품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3.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대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 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 자가 위탁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신청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한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을 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표준 연동 계약서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방위산업물품의 명칭
 - 2. 하도급대금 연동의 주요 원재료 또는 원재료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4.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 지표 및 산식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첨】 표준 미연동 계약서로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⑦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제4항에 따른 미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32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율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방위산업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 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행위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 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물품의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중도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방위산업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 ①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정이 소멸한때에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1.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 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⑧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수급사업자가 작업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원재료·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⑩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는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로 할 수 있다.

제35조(대금의 상계) ① 원사업자는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 상계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6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 된 경우
-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3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 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보호 특약서에서 정한 바에따른다.

제39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하다.
 -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약정
- ③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0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한 행위
 -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③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물량 등이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방위사업계약

제43조(계약의 형태)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에 적용한다

- 1. 확정계약
- 2. 개산계약 (일반개산계약 등)
-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정산하기로 한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은 제1항 제2호에 의한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4조(하도급대금의 정산) ① 이 계약이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산계약인 경우에는 방위사업 청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한다.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개산계약 체결 시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산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확정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정산을 이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확정계약과 달리 그 품목에 대해 정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부정행위 금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원사업자의 임직원임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착오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3자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가 부당이 득을 얻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

제6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7조(계약이행보증금 및 대금지급보증금) ① 이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대금지급보증 금을 약정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사업자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대금지급보증금은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8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제4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가 제2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23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23조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한 방위산업물품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1. 그 방위산업물품의 판매·제공 규모(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중 수급사업자가 제조하거나 할 수 있었던 방위산업물품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방위산업물품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물품의 규모를 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 2. 그 방위산업물품의 판매·제공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하거나 할 수 있었던 방위산업 물품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방위산업물품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 ② 제23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제23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방위산업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결과 합격한 후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재료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 등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 4.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제51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이 발생한 보증서를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방위산업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부적당함을 알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등 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경우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 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 한다.
 - 1.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수급사업자
 -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원사업자
- ⑤ 수급사업자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등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⑥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제조물책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방위산업물품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청구되거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 력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 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제조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제조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제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방위산업 물품의 제조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6.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또는 보증서)을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방위산업물품의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방위산업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

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방위산업물품의 제조를 지체 없이 중지한다.
 -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에 그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3. 원재료등 중 방위산업물품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방위산업물품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4조(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및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1.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기술자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2. 제38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3. 제51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사항
- 4. 제52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제55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재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은 다음의 자로 한다.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

제5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계약물품 명세서

순위	품 명 (품목번호)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기 (납지)	비고
	합 계					

비밀보호 특약서

ㅇㅇㅇ 회사(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ㅇㅇㅇ 회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ㅇㅇㅇㅇ 하도급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방부훈령 제 2132호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별표3] '비밀보호 특약'에 따라 보안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적)

이 비밀보호 특약은 방위사업관련 군사비밀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군사비밀 자료)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라 함은 군사비밀이라고 표시 고지된 문서 (전자문서 포함),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 3 조 (보안책임)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설명 받은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 ·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의 표시 고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설명)하는 비밀자료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군사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설명)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삭제, 변조,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비밀의 열람 제한)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비밀로 표시, 고지한 문서, 도면 또는 장비, 자재(이하 "비밀문서 및 장비"라 한다)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기술용역 또는 제조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서 비밀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호관리)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비밀에 속하는 비밀문서 및 장비에 대하여 성실히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점검하고 인정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일과 후 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원사업자가 지정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의 생산 및 배포)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시하거나 또는 요청한 외에 비밀문서를 생산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비밀의 배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위촉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하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는 시설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제 8 조 (비밀의 활용)

-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수 없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원사업자가 제공한 비밀자료를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계약한 사업이 타 사업자의 참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위촉 또는 하도급 사유와 내용
 - 2. 보안대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 9 조 (방문 및 출입통제)

- ① 수급사업자는 연구실, 공작실(제조), 시험시설 등 보호구역에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원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방문을 승인한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비밀 공개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관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외래인의 방문통제 이외에 소속직원 또는 종사원으로서 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위촉 및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촉한 비밀에 속하는 용역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 타 사위촉 또는 하도급 내용과 사유 및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보안조치)

- ① 수급사업자는 연구실 또는 제조실(공작실), 비밀공사장, 시험분석실 등에 비밀보호 조치를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비밀보호 조치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 원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
 - 1. 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
 - 2. 보안담당관 임명
 - 3. 취업 간 또는 취업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4. 방문 및 출입 통제대책
 -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 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 간 보안대책
 -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
 - 9. 보안사고의 대책 및 조치
 - 10.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 12 조 (보안점검)

① 원사업자 또는 대리자(원사업자의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보안조치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원사업자 또는 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수급사업자는 비밀의 누설 혐의가 있거나 분실 또는 과실파기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전말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밀의 반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계약 종료와 동시 1주일 이내에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교부한 비밀문서 및 장비와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간 중 생산되었거나 복제, 복사한 비밀 등(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비밀을 원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 계 약 명(名)
	최 초 :	계 약 금 액
	계 으	부 기 간
	하도급	: 계 약 명(名)
	최 초 :	계 약 금 액
	계 으	부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원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 1 10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 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 5. 직불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 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 유지계약서(별첨) 1-2. _ 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무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	우자	이메일	
	부서 및 직책	성명	이 매 걸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별첨】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 명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위의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의 변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항목	변경전 계약내용	변경후 계약내용

※ 이 양식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에 줄을 늘리거나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제3조(수탁업무량 중가에 따른 계약기간 및 대금의 조정) 제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긴급발주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변경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변경한 내용이 하도급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변경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문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내용은 그 서면합의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상기의 내용으로 변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재료" 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 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4. "조정요건" 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5. "조정 주기" 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

다.

-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하다)로 하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 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다.
-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 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 - - - - - - - - - - - - - - - - - - -	조정대금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소생활	원재료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반영일	확인	확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하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 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